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정현주**

Civic Stratification and Spatial Division of Immigrants in Korean 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Migrant Workers' Visa Status Based on Ethnicity and Gender*

Hyunjoo Jung**

요약 : 본 논문은 한국의 이주정책을 통하여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화가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더욱 공고해짐을 주장한다. Lockwood 및 Morris의 시민적 계층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를 조망하는 본 연구는 민족, 계급, 젠더가 교차하며 차별적인 시민적 권리를 지닌 이주민 집단 간의 위계가 조성되는 현상을 진단한다. 이주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민족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라는 이원적 통치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남성 이주노동자들과 서비스업 중심의 재외동포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야기한다. 또한, 같은 민족집단 내에서도 계급적 지위에 따라 재외동포(F-4)와 이주노동자(H-2)라는 이원화된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민족, 계급, 젠더의 다양한 접합에 따른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차등적인 권리의 부여는 이주민의 모빌리티, 직업 및 주거 접근성에도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 집단 간의 공간적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한국의 도농격차 및 수도권 중심의 공간적 위계 구조는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이는 시민적 계층화 연구를 위해 사회-공간적 과정의 접목이 중요함을 함의한다.
주요어 : 시민적 계층화, 공간분화, 이주정책, 이주노동자, 민족, 젠더

Abstract : This paper claim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s underway through the Korean migration regime and further fortified through their spatial division. Based on Lockwood (1996) and Morris (2002; 2003), the paper explore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n Korea and highlights the different civic rights which stem from the intersec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are granted to different immigrant groups. It constructs dual control over migrant workers based on ethnicity generating socio-spatial division between non-Korean male-manufacturing workers (E-9) stuck around medium-sized cities and ethnic Korean female-service workers, for example, with greater job flexibility in the capital region. The overseas Koreans are, however, further divided along with class into elite overseas Korean (F-4) and migrant workers (H-2) showing a complex combina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in civic stratification. Different civic rights cause spatial division among different groups by affecting mobility, job opportunities, and accessibility to infrastructur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hierarchy where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ve supremacy over the other areas provide the foundation of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suggesting civic stratification as socio-spatial processes.
Key Words : Civic stratification, Spatial division, Migration policy, Migrant workers, Ethnicity, Gender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2452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0072@snu.ac.kr)

I. 서론

초국적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한국은 바야흐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수는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과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하여 등록한 외국인 수도 1,271,807명에 이르고 있다. 이민 국가로 흔히 알려진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미국(2004년 12.2%), 독일(2003년 12.9%), 프랑스(1999년 10%), 캐나다(2004년 18.9%) 등은 다문화주의 논의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 무렵 10%를 약간 상회하는 이민자 비율을 보였으며(윤인진, 2008), OECD 국가의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의 평균치가 13%(2014년 기준)¹⁾임을 볼 때 외국인 10%는 완전한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OECD 기준 다문화사회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동아일보, 2020년 12월 4일자) 한국은 조만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수반되는 다양한 쟁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민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논쟁으로, 아무리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도 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손님 내지는 일시적 방문자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 공동체 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누리는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거주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동시에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의무가입되는 공식 노동자이다. 서구의 다양한 이민국가들은 외국인 납세자를 거주민과 동일한 행정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최근 코로나 19 지원금처럼 일부 공적 서비스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법률용어가 아닌 시민권은 법적 성원권인 국적과는 다른 광범위한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정에 관한 논의(Kofman, 2002; 장동진 등 역, 2010; Snel *et al.*, 2015)에서 주로 등장한다. 정책 담론에서는 국적과 동일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가령 미국 시민권자), 학계에서는 국적보다는 거주권 내지는 공동체 성원권과 더욱 가까운 개념

으로 쓰인다. 한국 행정체계에서는 외국인인 공동체 구성원을 ‘외국인 주민’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손님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일반에 비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기 거주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은 학계에서 논의하는 광의의 ‘시민’ (그러나 불완전한 지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구성원의 증가는 이처럼 불완전한 권리를 가진 다양한 층위의 ‘시민’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보통 이민정책에서는 사회통합의 우선 고려대상이 있는 반면, 통합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이 늘 존재한다. 전자에게는 영주권 등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체류자격이 쉽게 주어지지만, 후자에게는 철저하게 배제 및 통제의 논리가 작동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나 OECD 국가 출신의 재외동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난민이나 이주노동자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적자가 아닐지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므로 한시적이더라도 ‘시민’이 된다. 다만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인정 여부는 예시한 바와 같이 매우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시민권 논쟁은 이처럼 누구를, 어느 정도로 적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한 논쟁을 의미한다.

그간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잠재적 국적 취득자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체류자들을 다문화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전체 외국인의 일부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166,882명, 혼인귀화자 176,915명)²⁾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들을 어떻게 정체화하고 어떤 시민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앞서 현재 한국의 이주 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저 논리는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공고화되는지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과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로컬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특성상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는 이들의 모빌리티와 직업 및 거주지 선택 등을 상이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인이므로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발현되는지, 동시에 공간적 조건이 그

러한 차등화를 어떻게 공고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고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시민적 권리의 차등화에 대한 고찰로, Lockwood (1996)와 Morris(2002; 2003) 등의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시민적 계층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둘째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하여 이들의 시민적 계층화가 어떤 공간분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고찰로 구성된다.

한국 이주정책에서 시민적 계층화의 핵심 기제로서 민족, 계급, 젠더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안창혜, 2016; Shin, 2017; Kim, 2018).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족과 젠더 등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접합되어 작동하는지, 그러한 접합이 어떤 새로운 시민을 양산하는지, 도시와 농촌 등 이주민의 공간적 조건은 이러한 시민의 양산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경험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현장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논문은 그러한 현장연구에 앞서 개념과 현황을 조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자료와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통계자료(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지도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II. 이주 통치전략으로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라는 개념은 Lockwood (1996)가 사회통합을 설명함에 있어서 계급 중심의 접근을 해 온 기존 사회학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욱 복잡·다양해진(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개념이다. 시민적 계층화란 시민권이 계층적으로 구성된다는 뜻으로, 시민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과거 국민국가 체제에서 ‘국민’은 모두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었고 시민권의 확장은 사회통합을 높임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Marshall, 2009). 그러나 초국적 이주가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전한,’ 그리고 동일한 시민권에 대한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적법한 법적 지위(성원권)를 가지더라도 시민의 권리는 불완전하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치 ‘1등 시민, 2등 시민’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차등적인 시민권으로 제도화되어 구성원의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정체성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바로 시민적 계층화이다(Lockwood, 1996; Kofman, 2002; 안창혜, 2016). Lockwood(1996)는 유럽의 사례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젠더, 연령, 종족(ethnicity)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시민적 계층화가 사회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핵심 기제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상을 4가지로 분류했다(표 1). 시민적 획득(civic gain)은 자국 시민과 대등한 수준의 시민적 권리 확보를, 시민적 확장(civic expansion)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종류의 시민적 권리를

표 1. Lockwood의 시민적 계층화 모형

		Moral and material resources**	
		+	-
Citizenship rights***	+	시민적 획득 (civic gain)	시민적 결핍 (civic deficit)
	-	시민적 확장 (civic expansion)	시민적 배제 (civic exclusion)

* Lockwood(1996:536)를 재구성.

** moral resources는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이고 material resources는 화폐 자원으로 환원 가능한 물리적 자원을 뜻함. 시민권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의미.

*** 시민적 권리란 성원으로로서 법적 지위(digibility)를 의미. (+)는 온전한 시민권을, (-)는 희망하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지칭하며(Lockwood, 1996:542-543), 시민적 결핍(civic deficit)은 온전하지 않은 시민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주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물질 자원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결핍이다(Lockwood, 1996:537). 마지막으로 시민적 배제(civic exclusion)는 그야말로 시민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배제되는 상태를 일컫는다(Lockwood, 1996:537). 시민적 계층화는 계급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정치·경제적 지위보다는 시민적 권리, 시장에서의 지위, 제도적 처우 등 다양한 영역의 복합적 지위를 통해 사회분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 젠더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분화와 통합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개념이다.

Lockwood(1996)의 개념을 이주연구에 접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Morris(2002; 2003)이다. 그녀에 따르면 지구화 및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지구적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러한 현상이 국가적 이해관계와 상충함으로써 국가마다 독점적 통제를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주정책이다(Morris, 2003). 이민자의 초국가적 증가는 지구적 권리레짐의 등장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인간 권리의 지구적 표준화가 아닌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이주민 권리의 차등화이다. Morris(2002)는 Lockwood(1996)의 시민적 계층화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민 통제 및 관리 전략으로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유럽 각국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Lockwood의 자원 획득·결핍(gain/deficit) 개념이 너무 단순하고 확정적이라고 보면서,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자본은 공식적인 제도화 과정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습득하거나 박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적 확장의 범위 역시 독자적으로 무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축소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위와 자원활용 유무라는 이원화된 틀을 넘어서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권리레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민적 계층화 논의를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4개의 수정된 시민적 계층화 방식을 제시했다(그림 1). 4개의 범주는 Lockwood의 범주와 사실상 거의 같지만 차이는 시민적 확장(civic expansion)과 시민적 축소(civic contraction)를 단정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Morris(2002; 2003)의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모델에 입각하여 국내 이주정책의 시민적 계층화를 살펴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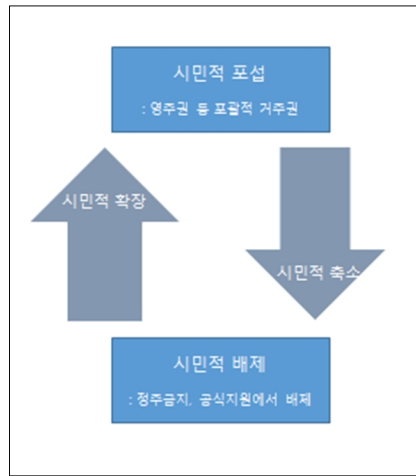


그림 1. Morris의 시민적 계층화 모형

* Morris(2002; 2003)와 안창혜(2016)를 참고하여 제작.

구로는 Kim(2018)과 안창혜(2016)의 연구가 있다. Kim(2018)은 한국의 이주레짐을 크게 계급에 근거한 위계적 이주레짐, 종족 특정적 이주레짐, 젠더화된 가족 이주레짐으로 규정하고 비자 타입을 나누는 주요 축으로서 계급, 종족, 젠더를 들었다. 안창혜(2016) 역시 한국의 이주민 시민적 계층화에 개입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계급, 종족성, 젠더를 들면서 이들이 상호교차하면서 상이한 시민적 지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안창혜(2016)는 특히 Morris의 4가지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 유형을 한국 이주정책의 체류자격 구분에 직접 적용하였는데, 시민적 포섭의 대표적 사례로서 재외동포 비자(F-4)를, 그에 반해 동일 민족이지만 계급적 지위가 낮은 방문취업자(H-2)를 시민적 축소의 사례로 들었으며 종족성이 계급과 결합한 형태로 시민적 계층화에 개입한다는 Kim(2018)과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F-6)를 잠재적 시민권자로서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모든 부문에서 훨씬 더 높은 권한을 부여받은 집단으로 본 Kim(2018)과 달리 안창혜(2016)는 이들의 시민권이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재생산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시민권으로서 '새로운 시민의 등장'(조희원, 2015)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확장에 해당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주의 체제에서의 제한된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달리 이주노동자(E-9)는 이동권과 거주권이 모두 박탈된 시민적 배제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타민족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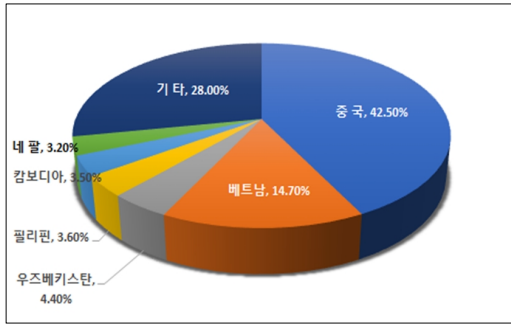


그림 2. 등록외국인 국적(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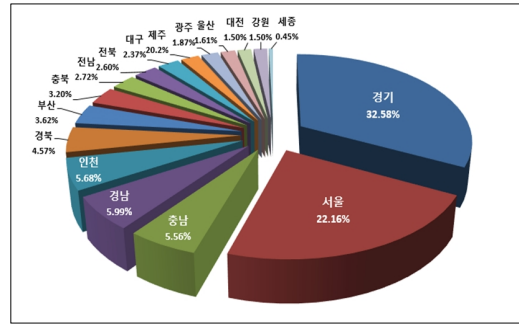


그림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시아 남성으로 대부분 구성된 E-9은 방문노동력으로서 취업을 통한 이주 기회를 부여받는 대신 시민권의 영역에서는 영구적 배제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안창혜, 2016).

이주민 계층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정책의 대표적인 전략이다(Kofman, 2002; Snel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계층화에 개입하는 논리는 일관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제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절충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한국도 민족, 계급, 젠더가 일관된 방식이나 절대적 우선순위에 기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절충적으로, 때로는 모순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시민적 지위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는 대개 체류자격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출입국관리를 통해 시행된다. 대표적인 출입국관리 수단인 체류자격 구분 방식, 즉 비자 정책은 시민적 계층화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즉 체류자격 구분 및 각 체류자격에 따른 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가 어떤 이주민에게 얼마만큼의 시민적 권리를 허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비자인 F-4이며(464,152명), 그 뒤를 비전문취업인 E-9(276,755명), 단기방문인 C-3(256,696명), 사증면제인 B-1(248,753명), 방문취업 H-2(226,322명) 등이 따르고 있다. A부터 C까지는 단기체류 자격이며 D부터는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는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거소신고를 한 등록외국인의 국적 중 중국(42.5%)과 베트남(1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다수가 중국국적이기 때문이다(그림 2). 장기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경기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인구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 이들 중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집단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은 바로 E-9, H-2, F-4 세 가지 비자로서, E-9은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게, H-2, F-4는 재외동포인 외국 국적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이다. E-9, H-2는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단순 비숙련취업 외국인력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F-4는 공식적인 취업비자는 아니지만 비숙련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으로 취업을 한정시킨 E-9이나 H-2보다 더 자유로운 취업비자로 운영되고 있다.

2. 체류자격과 민족

III. 한국 이주정책의 시민적 계층화

1. 한국 이주정책에서 체류자격 분류 및 현황

한국 이주정책에서 체류자격은 크게 A부터 H까지 8가지 계열로 나뉘고 이는 다시 36개 체류자격으로 세분된

그간 이주 정책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은 주로 해외동포에 대한 한국 이주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해외동포에 대한 특혜성 체류자격 운영을 근거로 한국의 이주정책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eol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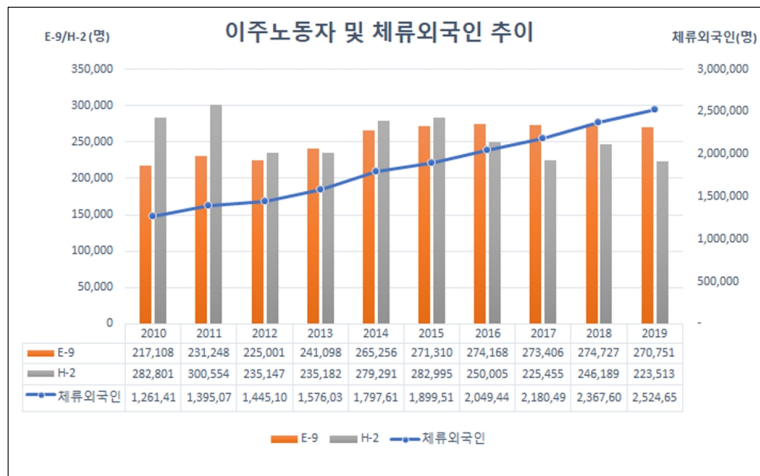


그림 4. 이주노동자 및 체류외국인 연도별 추이(2010~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Skrentny, 2009; Lee, 2010; 안창해, 2016). 디아스포라에 대해 일정 부분 자국 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해외동포 예외규정은 대부분의 이산국가에서 실시하는 민족 특성 시민적 계층화 장치이다. 외부인을 시민으로 유입하는 경우 동일 민족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민족적 통합을 쉽게 달성하려는 정책으로서, 근대 민족국가 이상 구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전후 독일에서 실시했던 디아스포라 귀환 정책이나 통일 후 동독 국민 수용정책(김기선, 2016), 일본의 남미계 일본 혼혈인 수용정책 등(Iwabuchi *et al.*, 2016)이 이 예에 해당한다.

한국의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해외동포에 대한 이주정책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이주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한국계 외국 국적자를 ‘동포’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4세대 이후 후손 및 입양인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가 편찬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통계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도 ‘외국 국적 동포’는 항상 따로 분류되어 개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등 중요한 정책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에서는 동일 민족이 시민적 포섭의 제1순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민족이라도 무조건 포섭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해외동포 중에서도 위계를 둬으로써 민족뿐만 아닌 다른 기준이 결합하여 시민적 계층화를 구성하고 있다. 외국적 동포에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

이 재외동포 비자(F-4)와 방문취업 비자(H-2)이다. 전자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여하는 계열의 비자이고 후자는 노동(취업) 비자이다. 최근 해외동포 출신의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논의에서 논란이 된 체류자격이 바로 재외동포 비자(F-4)인데, 국내에서 3년마다 갱신으로 영구체류가 가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폭넓으며 향후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신청 자격을 취득하는 비자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시민권과 유사한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는 비자이다(YTN, 2019년 7월 11일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재외동포란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외동포 비자인 F-4의 세부 발급 조건을 보면 이들 중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의 영주권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전문직(변호사, 의사, 기자, 10만 불 이상 기업가, 다국적기업 임직원, CEO 등)”이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YTN, 2019년 7월 11일자). 이들 기준이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준거는 동일 민족 중에서도 상층부 사회경제적 위치 즉 높은 계급적 지위이다. 민족 외에 계급이 시민의 자격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미이다.

3. 체류자격과 계급 또는 숙련도

계급은 한국 이주정책 용어에서 흔히 노동의 ‘숙련도’로 치환되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보통 학력이다(Lee and Chien, 2017). F-4와 흔히 대비되는 H-2 비자는 고용허가제로 운용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외국 국적 동포 중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즉 동포라는 민족적 지위와 노동의 숙련도라는 계급적 지위가 결합한 절충형 비자로서, 친지와 가족에게 부여하는 F 계열의 비자와 외국인 한시적 고용에 부여하는 E 계열 비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체류자격이다(Lee and Chien, 2017).

F-4와 H-2의 구분과 운영을 살펴보면 한국 이주정책에서 계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법이 최초 발의되었을 때 재외동포의 범주를 “한국 국적자나 그들의 직계 후손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반도 바깥으로 이주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재일 교포는 대부분 포함됐지만, 건국 이전에 한반도 바깥으로 이주했던 조선족과 고려인은 명백히 배제되었다(Lee, 2010).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위헌이 인정되어(2001년) 헌법재판소가 2003년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서야 개정이 이루어져서 “건국 이전 이주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수교 직후 대규모로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밀려오는 것에 대한 관료들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Lee and Chien, 2017). 당시에 해외동포란 주로 OECD 국가에 정착한 한국계 이주민들로 상정되었고 개발도상국의 한국계 이주민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는 계급적 상상이 내포되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재외동포의 시민적 권리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법적 규정과 달리 실제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민족과 계급이 암묵적으로 결합한 이원적 통치 기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원적 통치를 더욱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사건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H-2)의 실행과 2008년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엘리트 고학력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대한 F-4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이들을 단순노무직의 저숙련 재외동포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해 낸 것이다. 즉 같은 조

선족·고려인이어도 계급 및 학력자본에 따라 F-4와 H-2로 이원화되어 ‘동포’라는 가족적 지위와 ‘이주노동자’라는 계급적 지위로 명백히 분할 관리되었다. 한편 신설된 방문취업제도는 이주 거버넌스 상 재외동포 정책이 아닌 고용허가제 밑으로 뒤편으로써 동포에 대한 처우에서 이주노동력 운용제도로의 방향 전환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 일반고용허가제(E-9)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단순서비스업 포함 36개 저숙련 분야 고용을 허용함으로써(표 2) ‘민족적 특혜’를 가미시켰다. 즉 단순 이주노동자들보다는 더 나은 권리를 지니지만 엘리트 재외동포보다는 시민적 권리가 축소된 절충형 이주민 계층이 탄생한 것이다. Seol and Skrentny(2009)도 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한국 비자 정책의 위계 구조를 지적하면서 H-2는 E-9와 비교해 고용 및 노동 분야 선택의 자유와 모빌리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 이주정책에서 민족(특혜)의 작동은 H-2와 E-9의 비교를 통해 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민족과 계급의 경계는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되어 왔다. ‘동포’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경계는 정권에 따라, 정치·경제적 기회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됨으로써 민족과 계급이 상대적으로 상호구성됨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족이나 고려인으로 대표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권의 온도차를 들 수 있다. Lee(2010)는 한국 이민정책에서 예외적인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 신설 등 동포에 대한 특혜성 자격 부여는 혈연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 당시의 정치적 전환 및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른 조치로서, 이는 서구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비자발적 강제이주를 당했던 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뒤늦은 보상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와 그 후손이라는 특정한 시대성을 지닌 집단을 특정하여 체류자격을 신설했다는 것이다(Lee, 2010). 조선족에 대한 관료들의 거부감으로 이 사건을 설명했던 Lee and Chien(2017)의 해석과 달리 Lee(2010)는 1999년에는 배제되었던 이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뒤늦게 포함된 것은 동포와 민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H-2라는 하이브리드 비자 정책 역시 민족주의가 아니라 부처 간 경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접근을 취한다(Lee,

표 2. 일반 및 특례 고용허가제 구분에 따른 취업가능 업종

산업분야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 육상여객 운송업 • 호텔업 • 여관업 • 한식 음식점업 • 외국인 음식점업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욕탕업 • 산업용 세탁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냉장 냉동 창고업(내륙),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2010). 2007년 H-2 신설 당시에는 ‘동포’라는 자격이 중요한 잣대였고 이는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동되어 다양한 재외동포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이후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지향하는 우파정권의 집권과 노동부가 이주 거버넌스에 개입하면서 고용허가제라는 의미가 대두되었고 (동포라는 특수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인력 관리제도로 의미가 변화한 결과 하이브리드 체류자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Lee, 2010). 즉 좌파 정권의 역사 해석이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통해 민족 포용성 증대로 나타났다면 우파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은 민족의 의미를 탈색하고 노동자라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부각하여 H-2 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Lee(2010)는 한국에서의 민족/동포 개념의 정치적 함의는 서구의 정치적 기후(좌파 정권 때 종족성이 탈각되고 우파 정권 때 종족성이 부각되는 경향)와는 반대로 흘러왔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를 한국과 서구가 지니는 식민주의에 대한 상이한 위치성 때문이라고 본다. 서구는 식민주의의 주체였고 이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주로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들의 후손

으로서, 이들에 대한 탈종족주의는 식민 질서의 청산을 지향하는 좌파 정치 이데올로기와 부합하게 된다. 즉 서구에서 종족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동일하며 이는 극우적 정치 지향성에 부합한다. 반대로 한국은 (일제) 식민주의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역전을 이룬 국제 지정학에서 흔치 않은 경우다. 일제강점기 때 발생한 강제이주자들의 후손을 ‘동포’라는 민족주의 언어로 호명하는 것은 식민잔재 청산이라는 피식민 국가의 탈식민 진보정치를 상징하는 정책이 된다. 즉 서구와 한국의 이민정책에서 인종/민족에 대한 상이한 정치적 재현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지정학적 권력 관계에서 양 지역의 상이한 위치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은 이주정책에서 계급, 민족, 젠더 등이 교차(intersecting)하는 방식을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체류자격과 젠더

이러한 차별화된 교차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지점이 바로 젠더가 이주정책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젠더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민여성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그전까지는 이주의 여성화 등 세계 이주연구에서 젠더가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논쟁에 적극적인 학술적 개입이 거의 없었다. 아니 한국에서 이주연구가 확산한 계기가 바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의 등장’(조희원, 2015) 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이주연구가 다문화연구와 동일어처럼 등치되는 현실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그만큼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은 이주사 및 이주연구사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긍정적인 효과는 이주와 젠더가 마치 당연하게 연관된 과정으로 수월하게 학계와 사회에 수용되어 젠더 관점에 입각한 연구와 정책을 많이 양산했다는 점이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결혼이민여성이 이주연구에서 젠더를 독점적으로 흡수하는 장르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즉 젠더는 마치 결혼이민여성의 전유물인 양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거의 전적으로 탐색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노동이민과 다양한 이주의 지형에서 젠더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되었다. 이는 한국 이주정책이 노동과 젠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철저히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양상과도 닮아있다. 이로써 전자는 인력정책으로, 후자는 가족인구정책으로 변형되어 각각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할의 업무로 분리되어 버렸으며 학계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이주 프레임을 답습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을 인력정책으로 축소하여 다문화정책에서 배제하고 다문화정책을 인구재생산 정책으로 파행운영해 온 ‘한국식 다문화주의’(오경석 등, 2007)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결혼이민여성은 이주와 젠더가 교차하여 체현된 존재임은 분명하며 이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앞서 안창혜(2016)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F-6)를 시민적 포섭이 아닌 새로운 시민권 확장의 사례로 간주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가지는 젠더화된 위치성에 주목한 바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은 타민족 아시아 여성으로서,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는 다른 그 어떤 이주민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러한 권리는 무급 돌봄노동과 재생산권을 수행하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소위 말하는 ‘젠더화된 시민권’이다(이안지영, 2009; 황정민, 2011; Choo, 2013; 2016; 조희원, 2015).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취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가족초청권이 제한적으로나마 주어진다. 또한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F-4, F-5(영주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까지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적으로는 시민적 포섭을 넘어서 시민권과 다를 바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를 유지하거나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에서 이 동권과 거주권, 사회권 보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젠더화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조건부 시민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젠더화된 시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2년부터 시행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제도이다. 한국 이민정책에서 가족동반이나 초청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은 귀화자 및 영주권자와 전문직 노동자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 허용이다(장주영·박민정, 2019). 바로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인데 그 주된 사유는 출산 및 양육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최장 4년 10개월간 체류가 허용된다. 대상 역시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부모가 고령이거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이 어려울 경우)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여성 혈족 1인으로 한정된다.³⁾ 이는 보통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이민자 가족초청으로 일부 대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만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국민)의 돌봄이라고 노골적으로 조건과 기간을 한정했다는 점, 부모가 아닌 경우 ‘여성’ 혈족만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 수행을 위한 보조 장치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등장은 다문화가정에까지 확산된 지속적인 저출산 경향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인구가족정책이며 결국 결혼이민여성은 각종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한국 국민의 재생산 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준다. 인도적 사유에서 보통 허용하는 가족초청 제도가 재생산 도우미로 초국가적 가족을 동원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처럼 젠더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노동의 젠더 분업이 굳건히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뿐만아니라 이주노동 분야에서도 젠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대표적인 것이 단순서비스직(식당 서빙 및 가사돌봄 등)이 ‘조선족 아줌마’로 대변되는 여성 노동자로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뿌리산업 등 공동화를 겪는 제조업이 20대 동남아 남성 이주노동자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Kim and Jung, 2018).

2019년 현재 H-2의 약 40%가 여성이고⁵⁾ H-2와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이 가능한 F-4는 여성이 52%를 차지한다. H-2의 52%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 중 여성은 76,169명이며 F-4의 75%를 차지하는 조선족은 남성이 166,711명, 여성이 179,828명으로, 단순서비스직 특히 돌봄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닌 조선족 여성은 총 255,990명이나 된다(법무부, 2019). 이는 E-9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E-9 노동자 253,848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안창혜(2016) 역시 그 어떤 이주민 집단보다 조선족 여성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서 단순서비스직 이주노동의 여성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민족 논쟁에서만 등장하는 H-2, F-4 체류자격을 계급, 민족,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재해석했다.

한편 E-9 노동자는 91.7%⁶⁾가 남성 노동자로 그 어떤 종류의 이민자 집단보다 노동의 젠더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비스직의 여성화와 반대로 뿌리산업⁷⁾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의 남성화 역시 젠더화된 이주의 결과이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구적인 노동의 젠더분업에 편입되어 특정한 젠더역할을 수행하도록 추동하는 초국적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하위프로세스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이주정책 역시 이러한 거시적 메커니즘을 반영하면서 선택적으로 조정된다. E-9과 H-2/F-4의 성별 차별화는 한국 사회가 노동의 젠더분리를 어떻게 계급 및 민족과 교차시키면서 활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

IV.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에 따른 공간분화

1.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이상의 문헌과 사례들은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양

상을 고찰한 것으로, 주로 사회학, 정책학 분야에서 이주정책 분석을 통해 이주민 집단 간의 법적, 사회적 권리 차이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시민적 계층화가 실제 생활공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것이 도시 및 지역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적 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적 계층화가 ‘공간분리’를 가져온다는 사회-공간의 연쇄 메커니즘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차별적인 권리의 배분은 인종, 계급, 젠더에 따라 직업과 주거 선택 및 사회적, 물리적 모빌리티의 차별화를 가져오며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뿐 아니라 이주민 집단 간 공간적 분리 또는 공간적 결집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화 시대 동서를 막론하고 대도시의 구조와 경관을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라 함은 이러한 ethnic enclave로 구성된 도시공간을 가진 사회로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 이후 서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ethnic enclave 연구를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초국적이주와 공간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어졌다. 가령 ‘transnational social fields’(Goldring, 1998; Levitt and Glick-Schiller, 2004), ‘translocality’(Mandaville, 1999; Greiner and Sakdapolrak, 2013), ‘다문화공간’(최병두, 2009) 등은 이주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이주,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이러한 공간적 과정을 필수적으로 매개로 한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현상은 초국가적 이주민의 주류사회로부터의 공간적 분리, 그와 동시에 동질 이주민 집단끼리의 공간적 군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간분리 또는 공간군집 현상이 차별의 기제이자 도시 슬럼화의 요인으로 보았다면 최근에는 이를 배제라기 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혼종적 공간으로 재개념화하고 있다(정현주, 2010; 이영민 등, 2013; 이영민·김수정, 2017; 정은혜, 2020).

이들 공간이 배제나 다양성의 공존이냐는 이 현상을 주류사회의 시선으로 보느냐 이주민의 시선으로 보느냐의 문제이거나 정착 초기인지 성숙 단계인지 등 시점의 문제이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논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 과정이 공간적 과정과 상호구성적이라는 점, 공간적 과정은 단순히 이주 과정의 결과적 발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공고히 하거나 촉진하는 핵심기제라

는 점이다. 공간적 과정이 이주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주가 특정 로컬리티의 맥락을 반영하게 된다. 초국가적 이주는 경계를 넘나들고 근대국가 체제의 영토성을 해체하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대표적인 현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 특정 로컬의 사회적 관계 및 자산에 의존하거나 이를 조성에 가는, 즉 로컬에 뿌리 내리는 영토화(territorialization) 과정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박배균, 2009; 정현주, 2010).

둘째, 그 결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주패턴이 생산된다. 이주민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과 인프라, 특정 장소를 통해 조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체류자격(임석희·송주연, 2010; 이현옥, 2015), 국적(최은진·김의준, 2011; 하성규 등, 2011; 손승호, 2016), 계급(이석준·김경민, 2014), 민족 및 젠더(정현주, 2012; 민성희·박정호, 2013) 등에 따라 상이한 이주의 지리를 구성하게 된다.

셋째, 이처럼 차별화된 공간적 패턴은 이주자 거주지 선택 등을 포함한 이주 메커니즘의 경로의존성, 특정 로컬에서 특정 로컬로의 연쇄이주(Silvey, 2004), 장소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Mattingly, 2001)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특히 이민자 집거지는 이민자들의 최초 정착 지로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됨으로써 이민자들의 공간 선택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이진영·남진, 2012).

이주민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양적연구를 통해 거주지 분리의 양상과 정도를 측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들 연구는 거주지 분리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거나(박신영 등, 2012; 이진영·남진, 2012), 외국인 집단의 공간분포 패턴을 유형화(박세훈, 2009; 손승호, 2016) 하는 등 외국인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간 패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제시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너무 단편적인 몇 개의 변수(특히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학적 연구는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에 매몰되어 이주의 공간적 발현 및 사회-공간적 연계를 간과했다면 공간적 접근은 반대의 한계를 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주의 사회-공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이주의 지리학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동학 및 그 함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이 요구된다.

2. 한국 이주노동자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 분리

본 장은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계층화가 어떤 공간화된 패턴을 수반하는지를 시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시민적 계층화의 대표적 기제 중 한국 이주 레짐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과 젠더의 교차적 작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이주의 경관을 만들어내는지 이주노동자(H-2, E-9)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족적 지위에 따른 공간분화: H-2와 E-9 이주노동자 사례

저숙련 부문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고용허가제는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Quota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일반고용허가제(E-9)과 재외동포를 위한 특례고용허가제(H-2)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2004년 원년부터 시작되어 주로 제조업 부문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최근 농축산업 등으로 허용업종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후자는 2007년부터 재외동포 특례정책으로 시작되어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두 범주 모두 3년 취업을 기본으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 한시적 노동비자를 발급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경우에 따라 최장 10년 가까이 체류가 가능하다. E-9과 H-2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으로서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이 비숙련 분야 이주노동자라는 뜻이다.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일반(E-9)과 특례(H-2)의 결정적 차이는 신청자격으로, 재외동포 여부, 즉 민족에 따라서 일반이나 특례냐가 결정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에 따른 구분은 허용업종 및 그에 따른 고용·취업 절차의 큰 차이를 가져와 사실상 노동시장이 거의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뿌리산업으로 대표되는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제조업 분야를 보호하고 중

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축산업업으로도 취업 쿼터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월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리 선정된 쿼터에 의해서 월별 입국자가 결정되므로 구직 외국인은 자국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뒤 구직신청서를 접수하고 한국의 고용센터가 알선한 사업주의 선택을 기다린 후 선정되면 표준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사전취업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입국하는 절차를 거친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산업인력공단 직원에 의해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2박 3일간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사용자에게 인수인계되어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⁹⁾

이처럼 신청에서부터 '배치'까지 마치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국가에 의한 일괄 통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취업과정이 본국에서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 역시 사업주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한국 입국 후 이들이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들의 체류비자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제한된다.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는 사유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국한된다. 만일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이 고용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권익과 이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반면 특례고용허가는 일단 비자를 받아 입국 후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이 개시된다. 구직활동 역시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취업업종과 시기, 거주지역 선택이 가능하다. 허용업종도 일반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더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서비스업종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표 2). 서비

스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E-9 체류자격에 비해 취업 범위가 굉장히 넓은 셈이다.

그 결과 E-9과 H-2 노동자는 취업업종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E-9 노동자는 전체적인 인구와 산업분포와는 별개로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 산업도시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더불어 비도시지역까지 공장이 있는 모든 곳에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그림 5). 특히 한국 뿌리산업의 중심지이며 만여 개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화성시¹⁰⁾는 2만여 명의 E-9 노동자를 수용하여 높은 중심성을 보인다. 또한 이현욱(2015)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듯 최근 영세공장이 급격히 몰려들고 있는 김포가 뒤를 이어 E-9 노동자의 대표적인 집적지로서 성장하고 있다(그림 6).

반면 서비스업 중심의 H-2 노동자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인다(그림 5). E-9 노동자와 전체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H-2 노동자들은 E-9 노동자에 비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현저히 작다. 즉 선호하는 몇몇 지역에 몰려 있다는 의미이다. 비도시지역 분포가 눈에 띄게 적으며 일반 대도시도 아닌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에서부터 경기도 시흥, 금천, 부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남서부 지역이 핵심 집적지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경로의존적 패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H-2 상위 20개 시군구에는 서울시 6개 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과 연계된 아산을 제외하고 전부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표 3). 특히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거주 밀도가 높은 지자체에 높은 분포를 보여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을 분포패턴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E-9과 H-2의 분포가 서로 절묘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위 내에 공동으로 랭크된 시군구는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아산시, 안성시 6개에 불과하다(표 3). 흔히 외국인노동자 집중분포지역으로 유명한 안산, 구로구 일대는 사실상 조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H-2 노동자 집거지이지 E-9 노동자의 집거지는 아님을 알 수 있다(오경석, 2010). E-9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에 서울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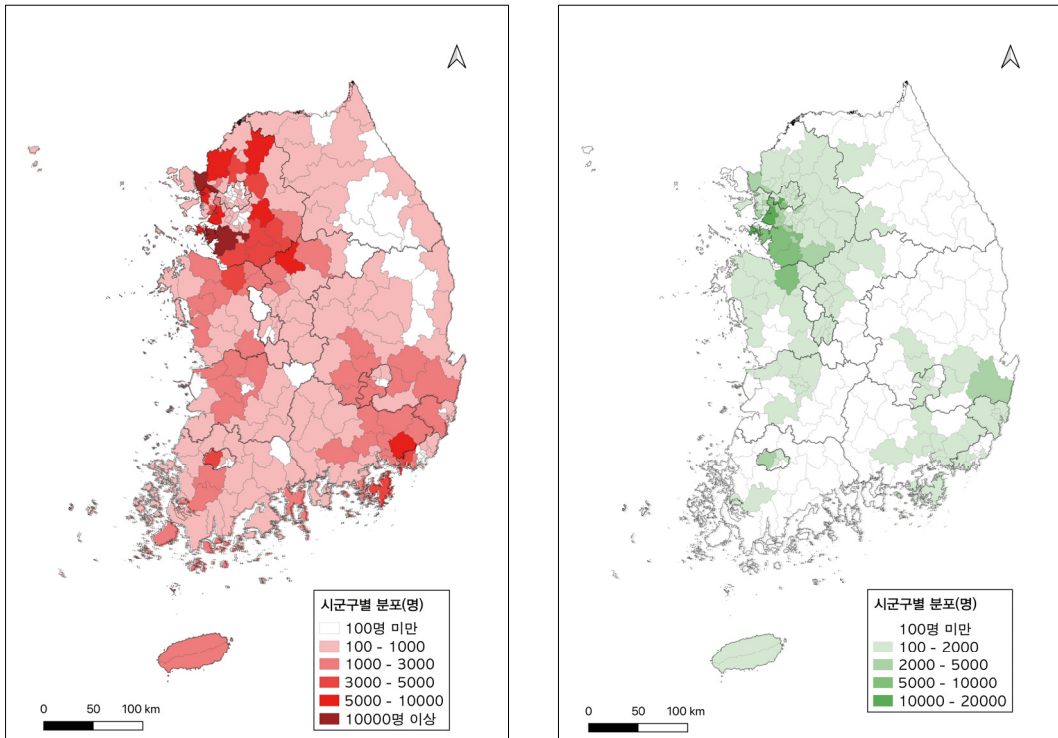


그림 5. E-9(좌)와 H-2(우)의 전국 분포(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지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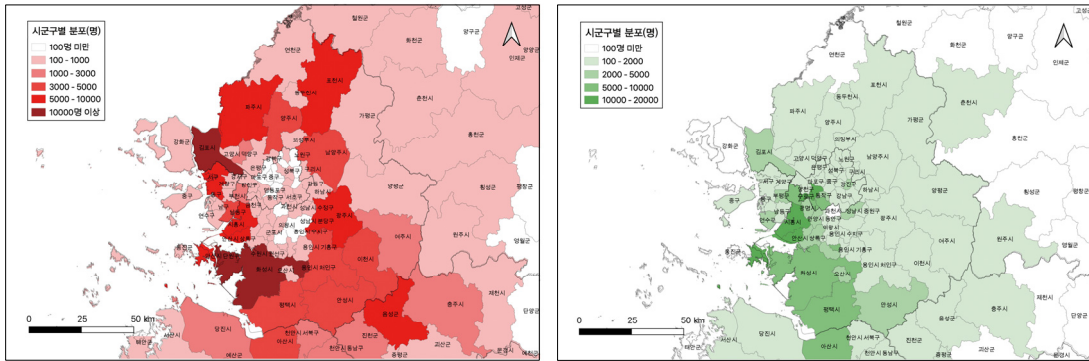


그림 6. E-9(좌)와 H-2(우)의 수도권 분포(2019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지도로 구성.

경없는 마을'이자 외국인노동자의 메카(구본규, 2013)처럼 인식되는 안산시 단원구조차 9위에 불과하다(표 3). 즉 외국인노동자라고 불리는 집단도 하위 그룹에 따라서 상이한 공간분포를 보이며 이는 국적별 차이가 아닌 체류자격과 연동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

2) 노동의 젠더분업과 민족·젠더에 따른 공간분화
 한국 이주노동의 젠더화된 특징은 노동의 젠더분업이 단순히 남녀 역할분담이 아니라 젠더와 민족적 지위가 결합하여 차등적인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E-9 노동자의 91.7%가 남성이며 조선족의

표 3. 외국인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2019년)

(단위: 명)

순위	E-9		H-2	
1	경기 화성시	21,398	안산시 단원구	17,966
2	경기 김포시	12,220	서울 영등포구	16,275
3	경남 김해시	9,243	서울 구로구	15,483
4	경기 포천시	8,925	경기 시흥시	11,955
5	경기 광주시	6,807	서울 금천구	9,397
6	경기 시흥시	6,346	경기 부천시	7,246
7	경기 파주시	6,290	수원시 팔달구	6,938
8	충북 음성군	5,508	경기 화성시	6,092
9	안산시 단원구	5,503	서울 관악구	5,768
10	인천 서구	5,489	경기 평택시	5,271
11	인천 남동구	4,969	충남 아산시	5,047
12	경기 평택시	4,809	경기 성남시 수정구	4,781
13	충남 아산시	4,577	경기 안산시 상록구	4,323
14	경기 안성시	4,505	경기 수원시 권선구	4,213
15	경기 용인시 처인구	4,457	서울 광진구	3,755
16	경기 이천시	4,306	경기 오산시	3,496
17	경기 양주시	4,206	인천 부평구	3,462
18	부산 강서구	3,924	서울 동작구	3,337
19	경기 남양주시	3,295	인천 연수구	2,747
20	광주 광산구	3,286	경기 안성시	2,69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표로 구성.

** 음영은 E-9, H-2 모두 20위 내에 든 시군구.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제조업과 여성 노동자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는 1차적 성별분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화성시의 20대 동남아 남성 공장노동자와’ ‘서울의 조선족 식당 종업원 및 가사도우미’라는 민족과 계급, 성별이 결합한 이주노동자의 전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E-9로 입국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고용허가제의 정착으로 한국으로의 이주가 점점 아시아에서 열망하는 이주 루트로 등장함에 따라 과거 결혼이주로 입국했던 여성들이 노동자로 입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대기수요가 많아지면서 한국어능력점수의 중요성이 커지자 언어접수에서 유리한 여성들이 고용허가제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산업 등 제조업 내에서도 남성 노동 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남성 노동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여성 노동자는 긴 대기시간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선호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인기 분

야인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 E-9 노동자의 농촌행이 최근 가시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발급된 농업 분야 E-9 7,170명(전체의 12.9%) 중 2,509명(36%)이 여성으로(조금희, 2018), 평균 8%대의 여성 비율에 비하면 4배 이상의 여성이 공장보다 농촌으로 더 많이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9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포함한 농촌의 여성 이주노동자는 2017년 총 1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조금희, 2018). 농업분야 쿼터가 2천~5천 명 선에서 유지되다 2013년부터 6천 명으로 증원된 배경에는 농촌의 절박한 인력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요는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입요소로 작용하였다. E-9 여성 노동자의 지역별 분포를 남성과 비교해 보면(표 4), 여성은 남성 노동자들의 분포패턴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밀양시, 논산시, 여주시, 금산군, 청도군 등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잘 가지 않는 농촌 지역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농촌행은 몇 가지 문제를 함축하

표 4. E-9 여성 및 남성 노동자 상위 20개 시군구(2019년)

(단위: 명)

순위	E-9 여성**		E-9 남성**	
	1	경기 화성시	1,744	경기 화성시
2	경기 이천시	1,106	경기 김포시	11,860
3	경기 포천시	1,054	경남 김해시	8,928
4	경남 밀양시	915	경기 포천시	7,871
5	충남 논산시	771	경기 광주시	6,155
6	경기 광주시	652	경기 시흥시	6,145
7	충북 음성군	557	경기 파주시	5,885
8	경기 용인시(처인구)	532	인천 서구	5,307
9	경기 안성시	473	경기 안산시(단원구)	5,232
10	경기 여주시	468	충북 음성군	4,951
11	경기 파주시	405	인천 남동구	4,794
12	경기 평택시	404	경기 평택시	4,405
13	충남 금산군	381	충남 아산시	4,362
14	경기 김포시	360	경기 안성시	4,032
15	경북 청도군	330	경기 용인시(처인구)	3,925
16	충북 충주시	319	경기 양주시	3,909
17	경남 김해시	315	부산 강서구	3,818
18	전북 익산시	307	경기 이천시	3,200
19	경기 양주시	297	광주 광산구	3,178
20	경기 양평군	284	경남 거제시	3,16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해당 자료를 표로 구성.

** E-9 여성 총 22,275명(8.3%), E-9 남성 총 246,934명(91.7%).

*** 음영은 남성노동자들과 달리 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

고 있다. 이들이 농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성중심적인 고용허가제하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농촌과 도시(공단) 모두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안전 및 주거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취취 문제가 당장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농촌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성폭력, 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경향신문, 2018년 3월 20일자; NBS, 2019년 7월 30일자; 경남도민일보, 2020년 11월 24일자), 농촌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대학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조금희, 2018). 농촌의 빈곤화와 더불어 농촌 이주여성의 신빈곤화(도승연, 2014)도 향후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의 농촌행은 도시(공단) 이주노동의 남성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도시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소수자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수반한

다. 이는 대표성과 연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등 집합적 소비재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수의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령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자 숙소 제공을 사용자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비주거 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원룸 등 주거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할 수 있다(Kim and Jung, 2018). 여성 이주노동자의 공간분리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이들의 안전성과 권익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향후 추가연구 및 정책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요약하면, 한국 이주노동의 젠더화는 민족적 지위와 결합하여 남성화된 제조업 대 여성화된 서비스업으로 크게 분화되며 이는 동남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등의 산업도시 집적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적이라는 공간적 분화를 수반한다. 젠더와 민족의 결합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뒤틀어서 이들 간에 새로운 위계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여성화된 재생산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도시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편익, 동일 민족집단으로서 지니는 언어적, 문화적 수월성 등은 전통적인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 반면 전통적인 남성적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하에 사회-공간적 이동제약을 당하는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소외된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젠더이분법을 넘어 젠더, 민족, 나아가 계급과 공간관계가 결합한 방식으로 시민적 계층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이주노동자, 여성, 농촌이라는 계급, 젠더, 공간적 관점에서 주변화된 지위가 이중 삼중으로 결합한 새로운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노동자 위계 내에서도 말단에 위치한 이들이 시민적 배제를 극복하도록 사회적, 공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V. 결론

지구화와 탈경계화는 자본뿐만 아니라 인구의 초국적 행단을 증가시켜 온 가운데, 노동의 유연화 및 탈산업화, 초저출산율 등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초국적 이주의 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근대국가체제의 근본적인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구성원이 일치하는 근대국가의 이상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며 현실은 영토 내에서도 차등적인 시민이 생성되며 영토 바깥의 구성원도 선택적으로 시민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방적인 국경통제에서 정교한 이주민 선별 및 관리로 진화해 온 이주레짐은 근대국가의 소멸이 아닌 탈근대적 재권력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의 문제, 즉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서 숙의민주주의 과정보다는 안보, 경제, 인구 등 국가 존립 및 경쟁력의 논리에 의해 하향식(top down) 과정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 통치가 다양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차등적

인 체류자격 부여가 그 핵심적인 통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민족을 중심으로 계급, 젠더가 이주민 체류자격 차등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간의 시민적 위계관계는 이들 요소의 교차에 의해 차별적으로 구성됨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이러한 시민적 계층화가 공간적 과정¹¹⁾과 결부되어 발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족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되는 이주노동의 조건은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라는 이원화된 이주레짐에 의한 차등적인 시민적 권리 부여의 한 예이다. 이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의 남성 이주노동자는 수도권 산업도시 및 도시 주변 중소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장 이동제한이라는 극단적인 모빌리티 제약을 받게 된다. 대체로 교통 및 주거 인프라가 열악한 영세공장 지대에 '배치'되는 이들은 비록 남성적인 노동을 수행하며 거대한 남초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만(Kim and Jung, 2018) 소외된 노동자로서 시민적 권리가 배제된다(안창혜, 2016; Kim, 2018). 이에 반해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서울과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재외동포 노동자는 비록 가사도우미처럼 전통적으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비공식노동을 수행하지만, 도시가 주는 인프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함으로써 온전한 시민권은 아니지만 축소된 시민적 권리를 누리게 된다. 전통적인 젠더이분법을 뒤집는 이들의 시민적 계층화는 젠더와 민족('동포' 우대)이 교차하는 특수한 이주 지형 속에서 탄생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정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위계적 공간구조,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 지역마다 차별화된 입지적, 사회문화적 자산 등이 결합하여 생산된 복잡한 사회-공간적 결과물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농촌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민족, 젠더, 계급, 그리고 공간적 위계 구조에서 중층적 주변화를 체현한 새로운 시민적 배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E-9 노동자이지만 남성 E-9 노동자보다 더 심각한 배제에 놓인 이들의 취약성은 여성이라는 점 이외에도 농촌과 도시로 상징되는 한국의 공간적 위계관계 및 이로 인한 기회구조의 차등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민적 계층화의 공간화를 시론적

으로 탐색하고 이 문제의 학술적, 사회적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민적 계층화의 공간화 또는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변증법은 구체적인 현장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탐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패턴으로 그러한 양상을 추론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계급이 민족, 젠더와 어떻게 결합하여 시민적 계층화를 만들어 내는지도 향후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공간적 분포를 통해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포착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현장연구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분리되어 이루어진 시민적 계층화 논의와 이주민 공간분석의 접목을 통하여 이주연구의 이론적 확장 및 정책적 대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註

- 1) OECD Statistics.
- 2)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 3)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 4)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출생아는 17,939명으로 전년(18,079명)보다 140명(-0.8%) 감소하여 지난 6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통계청, 2019).
- 5)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223,513명의 H-2 체류자 중 남성이 134,948명, 여성이 88,565명으로 여성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 6)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270,751명의 E-9 체류자 중 남성이 248,405명, 여성이 22,346명으로 여성은 8.3%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남초현상을 보인다.
- 7) 뿌리산업(root industries)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초기술 분야로서, 한국에서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하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정의된다.

- 8)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 9)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 10) 2017년 3분기 기준 화성시에는 9,723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공공데이터포털)
- 11) 공간성은 시민적 권리의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김민성, 2017).
- 12) 이에 더하여 최근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 패러다임은 지역간 불균등을 더욱 확대해 왔다(이용균, 2014).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GIS 지도제작을 도와준 이소영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구분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9(2), 5-51.

김기선, 2016,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노동법논총, 37, 111-158.

김민성, 2017,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와 적용: 장애인 시각에서 대구 근대화 골목 바라보기,” 한국지리학회지, 6(3), 339-354.

도승연, 2014,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바라본 신빈곤 속의 여성의 삶: 21세기 한국 농업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관하여,” 한국여성철학, 22, 5-33.

문경희, 2013, “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3(3), 197-224.

민성희·박정호, 2013,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분포와 국토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435, 1-6.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7(5), 217-230.

손승호, 2016,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인구구성 변화와 주거공간의 재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57-70.

- 안창혜, 2016,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체류자격 구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6(2), 93-132.
- 오경석, 2010, “다문화 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국토, 342, 39-45.
- 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홍순·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이희수·강희복,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석준·김경민, 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1-16.
- 이안지영, 2009, “영주권을 선택한 결혼이주 여성의 ‘협상하는 시민권’” 여성 이론, 21, 28-52.
- 이영민·김수정, 2017,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특성과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예비적 연구: 출신 국가와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197-238.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55-70.
- 이용균, 2014,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개발의 방향” 한국지리학회지, 3(2), 147-157.
- 이용승, 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누가 시민이며, 시민권 향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8(5), 185-206.
- 이진영·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85-100.
- 이현옥, 2015,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 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57-74.
- 임석희·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 장동진·황인혁·송경호·변영환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Kymlicka, W.,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장주영·박민정, 2019,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 정은혜, 2020, “외국인의 군집과 분리공간에 대한 고찰 -남해 독일마을과 서울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 Cultural Criticism*, 10(1), 122-141.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1), 105-144.
- 조금희, 2018,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조희원, 2015, “새로운 시민의 등장과 한국의 다문화현상: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3(3), 235-254.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 지방적 윤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45.
- 최은진·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85-107.
- 통계청, 2019, 「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 하성규·마강래·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Choo, H.Y., 2013, The cost of rights: Migrant women, feminist advocacy, and gendered morality in South Korea, *Gender & Society*, 27(4), 445-468.
- Choo, H.Y., 2016, *Decentering Citizenship: Gender, Labor, and Migrant Rights in South Korea*,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ldring, L., 1998 The power of status i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in Smith, M.P. and Guarnizo, L.E.,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Greiner, C. and Sakdapolrak, P., 2013, Translocality: Concepts, applications and emerging research perspectives, *Geography Compass*, 7(5), 373-384.
- Iwabuchi, K., Kim, H.M., and Hsai, H.C., 2016, *Multiculturalism in East Asia: A Transnational Exploration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Kim, G., 2018,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i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68-96.
- Kim, Y.H. and Jung, H., 2018, Promoting and controlling labor migration: South Korean state's classification for control in the temporary migrant worker pro-

- gram and its (un)intended outcomes, *Th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3(2), 229-246.
- Kofman, E., 2002, Contemporary European migrations, civic stratification and citizenship, *Political Geography*, 21(8), 1035-1054.
- Lee, H.K., 2010, Preference for co-ethnic groups in Korean immigration policy: A case of ethnic nationalism?, *Korea Observer*, 41(4), 559-591.
- Lee, S. and Chien, Y.C., 2017, The making of 'skilled' overseas Koreans: transformation of visa policies for co-ethnic migra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3(13), 2193-2210.
- Levitt, P. and Glick-Schiller,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Lockwood, D., 1996, Civic integration and class form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531-550.
- Mandaville, P., 1999, Territory and translocality: Discrepant idioms of political identity, *Millen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8(3), 653-673.
- Marshall, T.H., 2009,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Manza, J. and Sauder, M., eds., *Inequality and Societ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 Mattingly, D.J., 2001, The home and the world: Domestic service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caring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70-386.
- Morris, L., 2002, *Managing Migra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London: Routledge.
- Morris, L., 2003,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74-100.
- Parreñas, R.S., 2015, *Servants of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2nd edition,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ol, D.H. and Skrentny, J.D.,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hin, J.J., 2017, A transnational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With focus on the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7(2), 128-153.
- Silvey, R., 2004,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gender politics of scale: Indonesian domestic workers in Saudi Arab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141-155.
- Snel, E., Faber, M., and Engbersen, G., 2015, Civic stratification and social positioning: CEE labour migrants without a work permit,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6), 518-534.
- 경남도민일보, 2020년 11월 24일자, "폭력 성추행 사각... 농어촌 이주노동자 실태 더 심각"
- 경향신문, 2018년 3월 20일자, "사실 여전히 미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이주노동자"
- 동아일보, 2020년 12월 4일자, "'상상 못한 미래' 대비하고 있나요?"
- NBS, 2019년 7월 30일자, "농촌 여자이주노동자, 성폭력에 무방비 노출"
- YTN, 2019년 7월 11일자, "유승준이 신창한 'F-4 비자'.. 발급 조건과 특징은?"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s://www.liveinkorea.kr/portal>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교신 : 정현주,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이메일: jung0072@snu.ac.kr)
- Correspondence : Hyunjoo Ju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jung0072@snu.ac.kr)

투고접수일: 2020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2일

